



보도 일시	2026. 3. 8.(일) 12:00 <3. 9.(월) 조간>	배포일	2026. 3. 6.(금)
담당 부서	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	담당자	김소영 팀장(043-880-5421) 조해령 대리(043-880-5425)

[소비자안전주의보]

두바이 쫄떡 쿠키 섭취 시, 알레르기·치아 손상에 주의해야

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쫄떡 쿠키*를 섭취하고 알레르기 발생, 치아 손상 등의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서 확인됐다.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상품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섭취 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.

*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만든 디저트
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□ '식품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'와 '이물질 혼입'이 주요 위해 원인

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두바이 쫄떡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다. 이 중 16건은 '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', 7건은 '이물질 혼입'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.

해당 디저트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.8%(11건)로 가장 많았고, 소화계통 장애 21.7%(5건),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17.4%(4건), 단순 이물질 발견 8.7%(2건),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.4%(1건) 순이었다.

<위해원인별 위해증상 현황>

(단위: 건, %)

위해원인	위해증상	건수	비율	위해원인별 합계
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	두드러기·알레르기·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	11	47.8	16(69.5)
	소화기·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5	21.7	
이물질 혼입	파절(부서짐)	4	17.4	7(30.5)
	구강 내 출혈	1	4.4	
	해당없음	2	8.7	
전체 합계		23	100.0	23(100.0)

· (만 37세, 여) 2026.2.4. 두바이 쫄떡 쿠키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, 혈관부종 증상 발생

· (만 39세, 여) 2026.1.5. 두바이 쫄떡 쿠키 섭취 중 혼입된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 파절 발생

□ 알레르기 유발물질,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 확인 후 섭취 필요

두바이 쫄득 쿠키는 밀, 우유,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*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. 관련 고시**에 따르면,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,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그러나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.

* 카다이프(밀, 대두), 마시멜로-젤라틴(쇠고기, 돼지고기), 탈지분유(우유), 버터(우유) 등

**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 등

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 쫄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,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.5%(27개)로 절반 이상이였다. 소비기한은 87.5%(35개), 원산지는 40.0%(16개)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.

또한, 두바이 쫄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(카다이프 등)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,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.

□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판매·재판매 제품 주의

두바이 쫄득 쿠키는 인기에 힘 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.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,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*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.

* 「식품위생법」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등

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쫄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▲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,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, ▲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, ▲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.

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‘두바이 쫄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’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*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.

* (사업자정례협의체) 기업 자율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각 업계가 공동으로 발족한 민관협력 네트워크

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
‘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’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위해정보 신고]

- (홈페이지) www.ciss.go.kr에서 ‘위해정보 신고하기’ 클릭
- (핫라인) 국번없이 080-900-3500



위해정보 신고

붙임 1. ‘두바이 쫄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’ 분석

2. ‘두바이 쫄득 쿠키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’ 실태조사

3. 소비자 주의사항



1 **위해정보 분석 결과**

- (전체)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두달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두바이 쏘독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임.
- (위해원인별) 주요 위해원인은 ‘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’가 69.5%(16건), ‘이물질 혼입’이 30.5%(7건)였음.
 - (식품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) 총 16건 중 ‘두드러기·알레르기·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’ 증상이 47.8%(11건), ‘소화기·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’ 증상이 21.7%(5건)로 확인됨.
 - (이물질 혼입) 총 7건 중 치아 ‘파절(부서짐)’ 증상이 17.4%(4건), 단순 이물질 발견으로 위해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은 ‘해당없음’이 8.7%(2건), 이물질로 인한 ‘구강 내 출혈’이 4.4%(1건)로 나타남.

<위해원인별 위해증상 현황>

(단위: 건, %)

위해원인	위해증상	건수	비율	위해원인별 합계
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	두드러기·알레르기·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	11	47.8	16 (69.5)
	소화기·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5	21.7	
이물질 혼입	파절(부서짐)	4	17.4	7(30.5)
	구강 내 출혈	1	4.4	
	해당없음	2	8.7	
전체 합계		23	100.0	23 (100.0)

2 **주요 위해사례**

- (만 37세, 여) 2026.2.4. 두바이 쏘독 쿠키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, 혈관부종 증상 발생
- (만 39세, 여) 2026.1.5. 두바이 쏘독 쿠키 섭취 중 혼입된 견과류 껍질로 인해 치아 파절 발생
- (만 12세, 여) 2026.1.28. 두바이 쏘독 쿠키 섭취 후 구토와 설사, 복통 발생

1 조사 개요

- (목적) 두바이 존독 쿠키 온라인 판매 표시실태를 조사하고, 구매·섭취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
- (조사대상)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두바이 존독 쿠키 관련 제품 40개
 - * 2026. 2. 4. 오픈마켓 랭킹순 기준 ‘수제 두바이 존독쿠키’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된 판매상품 선정(중복업체 제외)
- (조사내용 및 방법)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고지되고 있는 상품정보 표시 현황(알레르기 유발물질, 소비기한, 원재료명(원산지)) 온라인 조사
- (조사 기간) 2026. 2. 4. ~ 2. 13.

2 조사 결과

-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일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, 소비기한, 원재료명(원산지) 등 상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음.

<두바이 존독 쿠키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>

(단위: 개)

구분	알레르기 유발물질			소비기한			원재료명(원산지 표시)		
	표시	미흡	미표시	표시	미흡	미표시	표시	미흡	미표시
판매처 수	13	5	22	5	24	11	24	4	12

- (알레르기 유발물질)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.
 -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준에 맞게 표시한 곳은 32.5%(13개), 표시가 미흡한 곳은 12.5%(5개), 표시하지 않은 곳은 55.0%(22개)였음.

모범 사례	개선 필요
밀, 우유, 대두, 돼지고기, 소고기 함유	카다이프(튀르키예산), 피스타치오(미국산), 가루(네덜란드, 싱가포르산), 젤라틴(국내산), 쇠고기, 우유, 대두 함유
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	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표시란 없음

- (소비기한) 정확한 연월일로 날짜를 기재하거나 제조일로부터의 소비 가능 기간을 기재해야 하며, 제조일과 소비기한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제품·포장 등 별도 표시된 위치를 명시해야 함.

※ (예시)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, 제조일로부터 ○○일까지

- 소비기한을 올바르게 표시한 곳은 12.5%(5개)였고, 표시가 미흡한 곳은 60.0%(24개), 표시하지 않은 곳은 27.5%(11개)였음.

※ ‘유통기한’은 소비자에게 오인·혼동을 줄 수 있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으며,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‘소비기한’으로 표시해야 함.

모범 사례	개선 필요
<p>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유통유지기한</p> <p>상품별도표기 제조일로부터 냉장 7일 냉동 1개월</p>	<p>제조일로부터 냉장 3일/ 냉동 20일 제조일자:</p>
<p>정확한 소비기한 표시, 정보표시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표시위치 명시</p>	<p>제조일, 제조일의 표시위치 미기재</p>

- (원재료명-원산지 표시)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1, 2,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함.

- 원재료명과 원산지를 기준에 맞게 표시한 곳은 60.0%(24개), 표시가 미흡한 곳은 10.0%(4개), 표시하지 않은 곳은 30.0%(12개)였음.

모범 사례	개선 필요
<p>카다이프(터키산/밀가루, 정제수), 피스타치오(미국산), 설탕, 물엿, 버터(뉴질랜드산), 화이트초콜릿(설탕, 코코아버터, 전지방분유, 대두레시틴, 바닐린), 정제수, 유채유, 코코아분말, 전지방분유(국산), 젤라틴(돼지고기 또는 소고기), 천일염(국산), 식품첨가물(바닐라향)</p>	<p>원재료명</p> <p>마시멜로우(자체제조)[설탕, 물엿(국내산), 젤라틴, 정제수, 말지방분유, 버터, 소금, 코코아파우더], 카다이프(자체제조)[종려분, 감자전분 등], 액커버터(뉴질랜드산), 피스타치오스프레드(피스타치오(미국산), 화이트커버춰초콜릿), 아몬드스프레드(아몬드(미국산), 화이트커버춰초콜릿), 말기시럽(프랑스산), 초코아카다미아스프레드(마카다미아(호주산), 말크커버춰초콜릿, 코코아파우더), 커피헤이즐넛스프레드(헤이즐넛(터키산), 마카다미아, 화이트커버춰초콜릿)</p> <p>* 원질 구성 성분으로 일부 원재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
<p>배합 비율이 높은 최소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</p>	<p>여러 제품의 원재료와 원산지를 함께 기재</p>



두바이 쫄득 쿠키 등 디저트 구매 시 주의사항



✓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 상품정보는 꼼꼼히 확인!

- 구매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, 소비기한, 원재료명(원산지) 등 상품정보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평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, 해당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섭취 시 유의하세요.
-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을 잘 지켜주세요.



✓ 이물질 혼입 주의!

- 이물질 혼입(견과류 껍질 등)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하세요.



✓ 상품정보나 위생이 불확실한 제품은 구매 유의!

- 상품정보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은 되도록 구매를 삼가는 것이 좋아요.



✓ 중고거래를 통한 제품 구매 및 판매 주의!

-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돼요.
- 카페, 베이커리 등 업체에서 구매한 수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지 않아요.